

2026-2027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학생 행동 규범

STUDENT Code OF Conduct

연방과 주 법률,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과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행정 규정과 다른 규정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책자의 해당되는 내용과 참고 문헌보다 우선시 됩니다.

학생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가치

학습
존중
관계
우수함
공평

비전

미래 준비

모든 학생은 지역사회와 그 너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자신감을 갖추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할 준비가 되어 졸업을 합니다.

사명

잠재력 발휘

모든 학생이 강력한 비평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학업적 기초를 쌓으며, 학습을 강화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모든 학생이 회복력과 적응력을 키우고, 평생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갖습니다. 모든 학생이 의미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자이자 협력자가 됩니다. 모든 학생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직업적 삶에서 성공할 준비가 됩니다.

교육위원회

Ms. Grace Rivera-Oven
의장

Ms. Brenda Wolff
부의장

Ms. Rita Montoya

Ms. Karla Silvestre

Mrs. Laura Stewart

Ms. Julie Yang

Ms. Natalie Zimmerman

Mr. Leul Dawit
학생의원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Thomas W. Taylor, Ed.D., M.B.A.
교육감

목차

바로 찾아 볼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간편 안내	1
서문	3
1부: 행동 및 안전 철학	3
2부: 행동 개입 매트릭스.	5
표1: 매트릭스에서 사용하는 행동 개입 조치 단계.	6
자주 묻는 질문.	8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매트릭스.	14
행동 중재 및 정의	27
학생 행동 규범 및 특수교육 요건	30
학생 행동 규범 및 대안 교육 프로그램 요건	31
이의제기 절차	32
학생의 행동 중재, 안전과 웰빙을 위한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	33
차별 금지 성명.	본 책자 뒷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으로, 조직도 승인 및 완료 시 연락처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간편 안내

위기 비상 전화 핫라인

24시간 정보 제공, 연계/리퍼 및 지원 대화

Montgomery County 위기

Hotline/EveryMind/ 988 and www.every-mind.org/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합니다.

Montgomery County 위기 관리 센터 240-777-4000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을 위해 24시간 내내 무료 위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revor Project 866-488-7386; 문자 메시지 678 678

Montgomery County 청소년 위기 직통 전화선(Youth Crisis Hotline) 988

훈련된 카운슬러/상담사가 24시간 전화 경청 및 서비스 연결을 통해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보안 관련 사항 신고

MCPS Department of School Safety240-720-3066

MCPS Student Conduct and Appeals

SWC@mcpsmd.org240-740-3215

MCPS 교육구 전체 담당 Title IX 코디네이터와 교육구 전체 담당 아동학대와 방임 연락처 학생 행동 및 이의제기 (Student Conduct and Appeals -SCA)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compliance/를 참조. SCA는 학교폭력/왕따/불링, 희롱(Title IX 성희롱 포함)과 위협 및 협박, 아동 학대와 방임 인식과 신고, 중오 편견, 괴롭히기/신고식, 성 정체성 문제 등에 관한 인간에 관련된 문제의 정책, 규정, 지침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법률 서비스 부서, Division of Legal Services 및 기타 MCPS 사무실 및 기타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합니다.

MCPS Cyber Safety Abuse@mcpsmd.org

MCPS의 부적절한 온라인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제보함 (Dropbox)

사이버폭력 팀라인 1-800-843-5678

아동 대상 성적 유인, 성추행, 아동 포르노, 아동 성 관광, 아동 성매매, 음란물 전송, 허위 도메인 및 온라인상의 오도된 단어나 디지털 이미지 신고를 위한 연중무휴 (주7일 24시간) 직통 전화선 (Hotline)입니다.

Safe Schools Maryland Hotline 833-MD-B-Safe (833-632-7233)

학생, 교사, 교직원, 학부모 및 일반 대중이 정신 건강 문제를 포함한 학교 또는 학생 안전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익명 무료 신고 시스템입니다. 제보 내용에 관한 정보는 제보자의 이름을 존중하며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의 담당 사무실과 공유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아동보호서비스(Montgomery County Child Protective Servic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4시간) 240-777-4417 또는 240-777-4815 TTY

아동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Montgomery County Child Protective Services에 신고할 수 있는 연중무휴 24시간 핫라인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취약한 성인을 위한 보호 서비스(Montgomery County Adult Protective Services for Vulnerable Adults)240-777-3000, 240-777-4815 TTY
성인 학대 및 방임 의심 사례를 위한 24시간 핫라인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 특수 피해자 조사국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Special Victims Investigation Division)

아동 및 성인 대상 성범죄, 신체적 아동학대, 가출, 실종 아동, 가정폭력 중범죄, 노인 학대/취약한 성인 학대, 성범죄자 등록위반 등을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에 신고할 수 있는 연중무휴 24시간 핫라인입니다.

Montgomery 카운티 경찰서:

마약 및 폭력조직 상담 전화

(Drug and Gang Tip Hotline) 240-773-GANG (4264) 또는 240-773-DRUG (3784)

Montgomery 카운티에서의 마약 및 조직 폭력 활동에 관한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입니다.

MCPS 리소스

카운티 학생회 단체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leadership

Director, Student Leadership Activities . . .240-740-3977

교육위원회 학생의원

www.montgomeryschoolsmd.org/boe/members/student.aspx

교육위원회(Office of the Board of Education) 240-740-3030

Chief of the Division of School Leadership and

Improvement240-740-3100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 .240-740-5630

Section 504 Coordinator240-987-8031

MONTGOMERY 비긴급 리소스

Montgomery 카운티 경찰 비긴급 전화번호 (Montgomery County Police Nonemergency Line). . . .301-279-8000

Montgomery 카운티 보건과 복지 서비스 안내 전화

보건복지부 관련 일반 정보(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General Information) 311, 301-251-4850 TTY

Montgomery 카운티 외 거주자240-777-0311

MCPS 정보와 비상시 안내

MCPS와의 지속적인 연결www.montgomeryschoolsmd.org

교육구 정보 및 비상 공지

MCPS 페이스북 Facebook . . www.facebook.com/mcpsmd

MCPS en Español . . . www.facebook.com/mcpsespanol

Alert MCPS 비상안내 . . www.montgomeryschoolsmd.org/alertMCPS



교육구 정보와 비상시 안내(계속)

Ask MCPS 정보 서비스

전화 240-740-3000
스페인어 핫라인 240-740-2845
이메일 AskMCPS@mcpsmd.org

MCPS 공보실(Public Information Office) . . .240-740-2837

MCPS TV 방송
www.mcpsTV.org; Comcast 34, 998; RCN 89, 1058; Verizon 36

비상 및 날씨 안내(녹음): 301-279-3673 301-279-3673

MCPS 웹사이트 자료

www.montgomeryschoolsmd.org

검색:

MCPS 학교 안내(MCPS School Directory)
MCPS 교직원 연락처(MCPS Staff Directory)
MCPS 전략 계획(Strategic Plan)
운동 경기(Athletics)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학교폭력/악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학교 버스 노선(Bus Routes)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Child Abuse and Neglect)
대학과 진로센터(College and Career Center)
상식 교육(Common Sense Education)
학과목 안내(Course Bulletin)
사이버 예절과 사이버 안전(Cybercivility and CyberSafety)
졸업요건(Diploma Requirements)
조직폭력과 조직폭력 활동(Gangs and Gang Activity)
성적 채점, 평가와 성적 보고(Grading and Reporting)

MCPS 웹사이트 자료 (계속)

www.montgomeryschoolsmd.org

증오 편견(Hate Bias)
종교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지침서(Guidelines for Respecting Religious Diversity)
학생의 성 정체성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Student Gender Identity)
LGBTQ 웹페이지
점심 급식 메뉴(Lunch Menus)
Maryland 주 고등학교 평가(High School Assessments)
차별 금지(Nondiscrimination)
졸업을 위한 온라인과정(Online Pathway to Graduation)
체육(Physical Education)
정책 및 규정(Policies and Regulations)
심리, 정신 관련 서비스(Psychological Services)
학생 담당 서비스(Pupil Personnel Services)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 신고(Reporting Allegations of Child Abuse and Neglect)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학교 상담 서비스(School Counseling Services)
학교 보건 서비스 (School Health Services)
학교 안전(School Safety)
성희롱(Sexual Harassment)
소셜 미디어 디지털 시민의식(Social Media Digital Citizenship)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특별 프로그램(Special Programs)
전략적 계획 수립(Strategic Planning)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
학생 온라인 e학습(Student eLearning)
학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Student Privacy)
학생봉사학습(Student Service Learning)
자살 예방(Suicide Prevention)
여름학교(Summer School)
Title IX

서문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가 질서 있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행 지침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행동 기대치, 안전 및 개입과 관련하여 Maryland 법률, Montgomery 카운티 교육 위원회 정책 및 MCPS 규정(이하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책자에는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누구나 MCPS 웹사이트에 있는 정책 및 규정 핸드북(Policy and Regulations Handbook)에서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의 전체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과 가족에게 가장 관심 있는 정책과 규정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첨부 문서인 MCPS의 학생 권리 및 책임 가이드(A Guide to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를 참조하십시오.

학생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은 MCPS 소유지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MCPS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부지, MCPS가 소유, 운영 또는 임대하는 MCPS 버스 및 기타 차량, 학생이 참여하는 MCPS 후원 활동(예: 견학, 졸업 파티 또는 교내 운동 경기)의 시설 및/또는 부지를 포함한 모든 MCPS 부지가 포함됩니다. 학교 시간 외에 학교 소유지 밖에서 발생한 학생의 부정행위는 학교장이 그 부정행위가 학교 환경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경우 또는 그 부정행위가 학교 활동에 상당한 방해나 물질적 간섭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행동 규범의 첫 번째 부분은 징계 정책에 대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한 교육위원회의 행동 및 안전 철학에 대한 성명입니다. 학생 행동 규범의 두 번째 부분은 MSDE 부정 행위 규정을 나열하고 각 규정에 대한 가능한 행동 개입을 권장하는 차트입니다. 이는 행동 개입 매트릭스라고 하며 5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8페이지부터 제공됩니다. 부록에는 추가 지원 정보가 있습니다.

1부: 행동 및 안전 철학

교육 및 학습에 전념하는 질서 있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기대를 제시하는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JGA, Behavior Intervention, Safety, and Well-being Plan에 책정된 바에 따라, MCPS 학교는 효과적인 학습에 필요한 긍정적이고 존중하며 질서 있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학습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학생의 잘못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예방하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합니다.

점진적 처벌(Progressive discipline)과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의 적용은 모든 MCPS 학교와 교직원에게 요구되는 기본 지침입니다. 점진적 징계와 회복적 접근법은 학생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적 조치입니다. 학생이 학교의 기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교 교직원은 학생 및 학부모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응 조치는 주의(Reminders), 면담, 기타 지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보다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학교는 학생 면담, 방과 후 반성(Detention), 학부모/보호자 면담 또는 기타 징계 조치와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비행이 관련된 경우, 학교는 즉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을 교실이나 학교로부터 등교 정지/제외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징계와 회복적 접근법의 목표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유지하며, 징계 조치가 상황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MCPS가 학생, 학부모/후견인, 교직원 모두가 협력하고, 서로에게 가치를 두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학습과 교습에 집중할 수 있는 질서 있고 안전한 긍정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식이 통하는 훈육을 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일 안전하며 성공적인 교육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다음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학생**은 자신의 학습과 개인 행동,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의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MCPS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자녀가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태도 문제와 학생의 행동 문제(학생이 직접하거나 학생을 향한 행동 포함)를 해결하기 위해 MCPS 교직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즉, 학부모/보호자는 자녀가 학교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보호자는 모든 학생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며, 안전하고, 환영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 **MCPS 직원**은 기대되는 긍정적 행동을 모델로 삼아야 하며 효과적인 학습에 필요한 상호 존중과 존엄성을 갖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는 적절한 종류의 긍정적인 행동 조정 전략과 조력을 사용하여 학생의 행동을 지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교직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학습 환경의 안전과 보안을 침해할 때,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 금지, 형평성, 문화적 이해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 따라 비례적이고 발달적으로 적절하며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사용하여 개입해야 합니다.
- **MARYLAND 법**에 따르면 MCPS는 학생에게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상처나 실수를 고치고 관계를 회복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회복적 관계를 회복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회복적 관계에 중점을 둔 접근방법을 통해 훈육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 이 훈육 조치의 기본 목적은 갱생, 회복, 교육에 있으며;
 - » 지도 방식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이어야 하며;
 - » 관계 개선과 기대 사항의 회복을 강조하고;
 - »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주 법률 및 MSDE(메릴랜드주 교육청) 지침**에 따라, MCPS는 학습에 도움이 되고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적절한 상황 완화(de-escalation) 전략 및 기술의 활용을 포함하여 연계적 행동 중재(continuum of behavior interventions)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 **퇴실, 정학 및 퇴학은 주법을 준수하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

Board Policy ACA, 차별금지, 형평성, 문화적 이해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차별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차별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모두를 위한 형평성, 포용성 및 수용성을 창출, 육성, 증진하려는 MCPS와 지역사회의 오랜 노력을 저해합니다.

2부: 행동 개입 매트릭스

MCPS는 적절한 행동/태도를 배우는 것은 학생의 발달 과정의 일부이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단계적인 대응과 개입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행동 및 발달적 요구를 충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교실 내 중재(1단계)**, **교실 내 중재 및 지원 자원(2단계)**, **학교장 중재(3-5단계)**, 그리고 **교육감 중재(6단계)**에 대한 설명은 6-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에 설명된 행동 개입 수준은 다음과 같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 나열된 위반 사항은 Maryland 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MSDE) 학생 기록 보관자 매뉴얼(Student Recordkeepers Manual)에 명시된 징계 규정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각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 행동에 대한 대응은 발달적, 연령적 측면에서 적절해야 하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처벌은 일관되고 공정하며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의 개인적 성장과 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행동 대응 조치는 가장 낮은 대응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 처벌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 회복적 접근법은 징계 1-5단계에서 이행되어야 하며 Synergy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등교 정지(출석 정지) 조치는 1-5단계에서의 점진적 징계 및 회복적 접근법에 대한 증빙 없이 이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직원은 다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 » 학생 징계에 있어서 차별적 편견과 불균형을 인식하고 제거하고, 징계 규칙을 일관되고 공정하며 공정하게 시행합니다.
 - »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공동체 창조와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 »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하는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¹, 가급적 신속하게 교실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처음으로 부적절하거나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학교 교직원은 이 기반에 명시된 단계 중, 제일 낮은 단계에서 한 종류 이상의 중재 또는 훈육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는 중재나 훈육조치 중 제일 낮은 수준) 그러나 때로는 학생의 특정 행동이 처음 발생한 경우라도 학교 교직원이 보다 강화된 대응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행동 중재 매트릭스 상의 더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후속 조치가 적용됩니다.

¹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1.11(A)(6)

표1: 매트릭스에서 사용하는 행동 개입 조치 단계

조치 단계 1	교실 및 교사 기반 교사는 수업 기술과 행동 관리 전략을 사용하여 교실과 학생의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고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기여하며, 학습 커뮤니티에서 성공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의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전략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포함합니다: • 조치 단계 1에서는 반드시 회복적 접근법(교실 기반)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치 단계 2의 징계 조치로 넘어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구두 지도(지적), 상기시키기/재지도, 서면으로의 반성/사과, 롤 플레이, 일일진도표 • 격리(디텐션) • 상황에 맞춰 학부모/보호자 연계(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로 연락)를 진행하며, 다루는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실 내 행동과 관련될 수 있는 학생의 학교 밖 생활 경험 » 현재까지 시행된 지도 전략 및 향후 방안 » 비공식적 및/또는 예방적 학내 멘토링 » 학내 갈등 해결 프로그램 • 카운슬러 또는 학생 복지팀(Student Well-being Team) 연계
조치 단계 2	교실 및 교사 주도 지도(전문가 자문 및 지원 자원 활용) 교사는 학부모/보호자 및 기타 지원 직원을 참여시켜 수업과 학생의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 기법과 행동 관리 전략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복구하고, 학습 커뮤니티와 학생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직원 은 지원 자원과의 자문을 통해,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작 사유(완화 요인)를 고려합니다. 조치 단계 2 전략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추가하여 고려합니다: • 모든 조치 단계 1 옵션(교사의 재량에 따라) • 학부모/보호자와 학생 면담(교사 및/또는 지원 담당 교직원과 함께). •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교실 기반 또는 회복적 접근법 코치, 전문가, 기타 지원 교직원의 주도로 진행): 조치 단계 3의 징계 조치로 넘어가기 전, 조치 단계 2에서 반드시 이행하고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 교육관리팀(Educational Management Team)과의 상의/협의 » 기능 중심의 행동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행동중재 계획(Behavioral Intervention Plan) » 행동 계약(Behavioral contract) » 봉사활동(Community service) » 학교 카운슬러/자원 전문가와의 계획된 체크인 » MCPS 또는 커뮤니티 전문 기관으로 인계
조치 단계 3	학교장 주도 지도(교내 징계) 학교장은 학부모/보호자 및 기타 지원 교직원을 참여시켜 학생에게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타인이나 학생의 학습 공동체, 그리고 학생 자신의 학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행동 관리 전략(Behavior management strategies)은 학생을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학생을 잠시 교실에서 빼낸 후 가능한 한 빨리 교실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치 단계 3 대응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전략/방법을 적용합니다: • 모든 조치 단계 1과 2 옵션(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 면담(학교장과 함께)에서 논의 – » 조치 단계 2에서 논의된 모든 옵션 » 학교장, 학교 카운슬러 또는 리소스 전문가와의 계획된 체크인 및 » 교사, 학생, 학부모/보호자 면담 • 회복적 실천(교실 기반 또는 회복적 접근법 코치, 전문가, 기타 지원 교직원의 주도로 진행)은 징계 조치 단계 4로 넘어가기 전, 조치단계 3에서 반드시 이행하고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 학과외 활동 참여에 대한 시간적 제한 • 교내 중재 • 교내 정학 • 학생 및 학부모 학교 복귀(복교) 면담을 동반한 익일 등교 정지(Overnight suspension)

표1: 매트릭스에서 사용하는 행동 개입 조치 단계

조치 단계 4	학교장 주도 (단기 징계) 학교장은 학부모/보호자 및 기타 지원 교직원을 참여시켜 학생에게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타인이나 학생의 학습 공동체, 그리고 학생 자신의 학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행동 관리 전략(Behavior management strategies)은 학생을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학생을 잠시 학교에서 빼낸 후 가능한 한 빨리 교실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치 단계 4 대응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전략/방법을 적용합니다: - 모든 조치 단계1, 2와 3 옵션 점진적 징계 대응표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조치 단계1, 2, 3의 회복적 접근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조치 단계 3의 징계 조치를 검토하기에 앞서 점진적 징계 및 회복적 접근법을 시행한 문서화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단기 정학(3일 이내)
조치 단계 5	학교장 주도 (장기 징계) 학교장은 학부모/보호자 및 기타 지원 교직원을 참여시켜 학생에게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타인이나 학생의 학습 공동체, 그리고 학생 자신의 학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행동 관리 전략(Behavior management strategies)은 학생을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학생을 잠시 학교에서 빼낸 후 가능한 한 빨리 교실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치 단계 5 대응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전략/방법을 적용합니다: - 모든 조치 단계1, 2와 4 옵션 점진적 징계 대응표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조치 단계 1, 2, 3, 4의 회복적 접근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징계 조치를 검토하기에 앞서, 점진적 징계 및 회복적 접근법을 시행한 문서화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장기 정학(4-10일)
조치 단계 6	교육감/지정 대리인 주도 이러한 대응은 11-44일간의 장기 정학 처분/연장 등교 정지(Extended suspension) 또는 45일 이상의 퇴학(Expulsion) 처분(조치 단계6)으로 학생은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단계 6 징계 조치를 적용하기 전, 조치 단계 1-5 에서의 점진적 징계 및 회복적 접근법 이행 내역이 반드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장기 정지 또는 퇴학은 Maryland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 학생이 교육 과정을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하루 종일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사용 가능한 적절한 행동 개입 및 징계 조치들이 모두 시행되었으나 효과가 없었을 경우 -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학생이 격리되는 기간을 실행가능한 제일 짧은 기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MCPSS는 격리된 학생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비교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와 » 학생이 정규 학업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3 신체에 임박한 중대한 위협의 위협(imminent threat of serious harm)이란 학생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이고 유의미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가능성을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중상해(Serious bodily injury-중대한 신체적 손상)란 광범위한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외부 요인 또는 위력에 의해 신체 구조나 기능에 발생한 심각한 신체적 손상 또는 위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해에는 사망의 실질적 위험, 신체 부위, 장기, 정신 기능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 및 기능 상실, 의식 불명, 신체 기형/변형, 및/또는 지속되는 신체적 통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학생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원적인 환경을 유지하고자,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관리자, 상담교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교사가 매트릭스에서 권장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개입을 할 수 있나요?

예. 참작 사유(Mitigating circumstances-완화 상황)는 과오의 심각성과 대응 수준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참작 기준(Mitigating criteria)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생의 나이
-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생의 발달적 이해
- 진단되지 않았거나 드러나지 않은 학습적 요구, 또는
- 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언어적 요인

행동 개입의 목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발생한 피해를 복구할 의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격려하여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실수로부터 배우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교장은 언제 더 높은 수준의 개입을 하게 되나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실수나 범죄가 더 심각해지거나 악화될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대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Maryland 주법에 따르면 행동 개입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와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Maryland 주법은 학교장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허용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학생의 삶의 환경 등이 포함되며, 또한 학교장은 점진적 처벌 및 회복적 접근법을 이행하고 그 증빙이 마련된 후 상향된 단계의 중재 조치로 대응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학교장은 아래의 **가중 처벌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이전 부정행위, 이전 부정행위 횡수, 소진되었거나 효과가 없다고 간주된 점진적 징계 조치
-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임박한 위협
-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부정 행위
- 교육 과정/운영의 중단
- 행동으로 인한 부상
- 증오를 조장하는 언어 사용 또는 이미지 및/또는 기호 표시

교장은 매트릭스에 명시된 가장 높은 단계보다 높거나 가장 낮은 단계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응 조치를 취하기 전에 Department of School Leadership and Improvement(DLSI)의 지역 부교육감(associate superintendent)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정학 또는 퇴학 수준에 대한 대응을 가중하는 데 대한 고려 사항은 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교육위원회는 증오심을 조장하는 언어 사용이나 이미지 및/또는 상징 표시가 사이버 폭력/불링을 포함한 학교폭력/따돌림/불링, 괴롭힘, 협박, 또는 재산 파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건 또는 학교나 학구 운영이나 활동에 상당한 방해가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징계 대응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책 ACA인 차별 금지, 형평성 및 문화적 이해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 명시된 개인적 특성에 기반하여 증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의 사용, 관련 이미지 및/또는 상징물의 게시나 인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인종 비하적 발언도 이에 해당합니다.

점진적 징계(PROGRESSIVE DISCIPLINE)이란 무엇인가요?

점진적 징계는 학생이 기대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학교 교직원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일련의 징계 조치나 후속 결과를 통해 학생의 학업 수행 및 행동 문제를 다루는 필수 이행 관행입니다. 점진적 징계의 목적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즉시 진행하기보다는 사전 통지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이나 저조한 성과를 교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구두 경고로 시작하여 서면 경고, 학부모 면담, 등교 정지(정학)로 이어지며, 부적절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최종적으로 퇴학 조치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조치 내역이 문서로 기록되고 적법 절차(due process)가 준수되는 한, 학교는 비행의 심각성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 단계를 조정하거나 일부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이란 무엇인가요?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은 모든 MCPS 학교와 교직원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수 이행 관행입니다. 회복적 접근법은 관계 구축, 책무성, 피해 회복 및 재할을 중심에 둬으로써 긍정적인 학교 풍토와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마인드셋(마음가짐)이자 일련의 지도 전략입니다. 회복적 접근법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관계를 회복하며, 학생의 웰빙/안녕(well-being)을 지원하도록 돕습니다. 회복적 접근법은 Maryland 주 Department of Education Code 7-306 및 학생 행동 지침(Student Code of Conduct)에 따라 징계 조치와 병행하여 운용됩니다.

Maryland 법에 따르면, 모든 징계 조치의 주된 목적은 회복적이고, 교육적이며, 재할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회복적 실천(restorative practices)의 핵심이며 회복적 접근법은 안전에 대한 약속과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The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은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을 지고, 학습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복적 접근법은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해 1-5단계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행동 개입(Behavior Interventions) 목록은 29-31페이지를 참고합니다.

버스에서도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이 적용되나요?

예.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은 MCPS가 소유, 운영 또는 임차한 버스 및 기타 차량을 포함하여 학생이 MCPS의 모든 재산(시설) 내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⁴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을 위반하는 행동이나 안전 규칙을 위반한 학생은 학교장에 의해 스쿨버스 탑승 권한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1) 스쿨버스 운전자는 학생의 스쿨버스에서의 행동과 훈육 문제를 MCPS Form 555-3, School Bus Disciplinary Report를 사용하여 학교장에게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2) 학교가 취하는 행동으로 훈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다음 조치를 위해 MCP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학군 수퍼바이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학생이 학교 밖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예. 학생의 MCPS 소유지 밖에서 발생하는 위법/부정 행위는 학습 환경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관계없이 학교 환경과 연결되어 다른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교육 환경을 방해하는 경우 MCPS 징계 조치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을 수업에서 격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하는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시행되어야 하며, 학생이 가능한 빨리 수업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격리(Removal)"는 학생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타임아웃, 방과 후 남기, 교장실 방문,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행동이 반복적이고 방해적이며, 학생과 교직원에게 불안정한(위험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경우 학생을 교실에서 퇴장 즉 격리 조치합니다. "격리" 조치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행동 조치 기준표(매트릭스-Matrix)를 참고합니다.

쉬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나요?

예. 사유와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MSDE 체육(physical education) 교육 지침에 따라 학교 교직원은 징계의 일환으로 신체 활동 및 쉬는 시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교육위원회 정책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 놀이와 대근육 발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합리적인 안전 상의 우려에 따른 조치는 "징계(discipline)"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²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1.11(A)(6) ³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1.11B(2),(3) ⁴MCPS Regulation EEA-RA, Student Transportation

"합리적인 안전상의 우려(Reasonable safety concerns)"에 따른 조치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생의 행동은 학교장 또는 지정자, 카운슬러, 학교 심리사,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또는 기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입은 쉬는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 놀이, 신체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생에게 단체로 벌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 일부 학생의 행동을 이유로 전체 학생 그룹을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더라도, 교사는 학급 전원을 방과 후 남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을 한 학생을 알 수 없는 경우이라도 이 규칙은 적용됩니다.

학생 또는 학급 전체에게 벌로 학습 과제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교사는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 과제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 동일한 문장을 반복해서 쓰게 하거나 사전을 복사해 적게 하는 행위 등) 다만, 학생이 수강 중인 수업과 관련하여 가치 있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과제는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글을 쓰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학업적 조치의 예시입니다.

성적은 행동 중재의 한 형태로 절대 조정, 감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업적 부정행위 (예: 표절 또는 학적, 성적 기록 위조)에 대한 후속 조치는 MCPS 규정 IKA-RA Grading and Reporting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MCPS는 학생에게 처벌로서 신체적 위력을 사용하여 징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위력을 사용하여 징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Maryland에 따라 MCPS 교직원은 싸움을 말리거나, 폭력을 예방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제의 사용은 MCPS Regulation JGA-RA:학급 운영과 학생 행동 중재(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와 Regulation COB-RA, 보고 대상 사건사고(Reportable Incidents)에 명시된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MCPS 내에서 금지됩니다.

동일한 행동 위반에 대해 학생을 중복 처벌할 수 있나요?

예. 반복되는 학생 행동,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점진적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반복되는 행동 위반을 점진적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지원적 조치와 행동 중재를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단일 학생 사안은 단 하나의 징계 대응으로 이어져야 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별도 후속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점진적이어야 하며, 특정 행동/사안에 기반해야 합니다(COMAR 13A.08.01). 학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학생에게 여러 후속 조치를 중첩(이중 처벌)하여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학급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인 행동 규범을 만들 수 있나요?

예. 학교 또는 학급의 행동 수칙이 법률, 교육위원회 정책, 교육구 전체의 안내서 및 지침을 포함한 MCPS 규정이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 개인적 행동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자신의 언어로 서약하는 것은 권장됩니다.

MCPS 구역에서 범죄가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MCPS는Montgomery 카운티 법 집행 기관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강도, 갇힌 관련 사건/범죄, 총기 소지, 비동의 성적 행위 등 범죄 행위나, 폭탄 위협/파괴 장치/폭발물, 방화 또는 방화 위협, 규제 약물 유통, 재산 파손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참조)

학생이 MCPS 구역 밖에서 발생한 범죄에 연루되면 어떻게 되나요?

학생의 위반 행위가 MCPS 관할 구역 바깥에서 발생했고, Maryland주 행정 규정 (COMAR) 13A.08.01.17.A.(8)(c)에 정의된 특정 강력범죄(체포 대상 범죄)에 해당 하는 경우 이를 보고 대상 범죄(Reportable Offense)라고 합니다. 신고 대상 범죄로 인한 체포는 MCPS 구역 밖에서 규정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Maryland주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기관은 학생을 체포한 후 24시간 이내 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감/지정인 및 해당 학교 학교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범죄로 인해 정학, 퇴학) 또는 학생의 일반 학교 프로그램 변경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Maryland 법에 따라, 행동 개입 매트릭스가 조치 단계 4를 나타내는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 내(in-school)" 정학(한 학년도당 10일을 초과하지 않음), "단기(short-term)" 학교 밖 정학(최대 3수일), "장기(long-term)" 학교 밖 정학(4-10수업 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11-44일의 장기 정학 또는 45일 이상의 퇴학(조치단계 6)은 Maryland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감/대리인이 다음 사를 결정할 때 집행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할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2. 학생이 교육 과정을 만성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여 하루 동안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사용 가능한 적절한 행동 개입 및 징계 조치들이 모두 시행되었으나 효과가 없었을 경우
3. 교육감이나 대리인이 등교 배제(정학/퇴학) 기간을 실제 실행 가능한 최단 기간으로 제한한 경우
4. MCPS는 등교 배제된 학생이 정규 학업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등한 교육 서비스 및 적절한 행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주 법률에 따라, 프리킨더가든(Pre-K)부터 2학년까지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정학 및 퇴학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Maryland 법은 Pre-K-2학년 학생에 대한 정학 및 퇴학 조치에 대해 한층 강화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장/대리인은 다른 중재 및 지원책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의 임박한 위협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 카운슬러 또는 기타 정신 건강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장/대리인이 정학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승인을 위해 DLSI의 Learning, Achievement, and Administration 담당 디렉터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정학 기간은 최대 5 수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re-K-2학년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는 연방 법에 의해 요구되는 상황에 한정됩니다. MCPS Regulation JGA-RB, 정학 또는 퇴학 (Suspension or Expulsion)을 봅시다.

교내 중재(IN-SCHOOL INTERVENTION-ISI)와 교내 정학(IN-SCHOOL SUSPENSION-ISS)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내 중재(In-school intervention-ISI)는 지원적이고 교정적인 중재 조치로서, 전체 1수업일 미만의 시간 동안, 학교 내 다른 공간으로 일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학생은 공식적인 정학 처분 명시 없이 기존 교과 과정의 수업을 계속 받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COMAR에 따르면, 교내 등교 정지(In-school suspension-ISS)는 학교장이 징계 목적으로 학생을 학교 건물 내에서 해당 학사연도 기준 최대 10수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신체적으로는 여전히 학교 내에 있지만 정규 교실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일종의 정학 형태로 간주됩니다. ISI와 ISS 모두의 경우, 학교는 학생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동등한 서비스와 행동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학이나 퇴학에 대해 항소/이의 제기를 수 있나요?

예. 정학이나 퇴학에 대해 항소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기 또는 장기 정학 (10일 또는 10일 이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장에게 10일 이하의 정학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즉시 이메일 또는 편지를 보냅니다. 학교장이 결정을 재고려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Division of Student Support and Attendance Services(DSSAS) 디렉터에게 학교장의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학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DPPAS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15일 이내에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에 연락하여 교육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The suspension will continue during the appeal process.

장기 정학 또는 퇴학(10일 이상): 학교장이 퇴학을 권고한 경우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학생을 10일 이상 정학시키려는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를 통해 요청되어야 합니다.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은 교육감의 결정이므로 만약 학부모/보호자가 교육감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규칙을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달력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훈육을 이유로 대체 교습 프로그램에 있을 경우, 기간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항소 절차는 정학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도 정학 또는 퇴학될 수 있나요?

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연방정부 법은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장애 학생의 권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MCPS Regulation JGA-RC, Policy JGA-RC, 장애 학생의 정학과 퇴학(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개별화 교육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IEP) 또는 504 플랜을 가지고 있고 학교 팀이 연장 정학 및/또는 퇴학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 팀은 먼저 학생의 행동이 장애에서 비롯된 것인지 즉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과관계 평가 회의(IEP의 경우 Manifestation, 504 플랜의 경우 Causation)를 개최해야 합니다. If the student's behavior was a result of their disabilities, the extended suspension and/or expulsion process stops. 추가 정보는 32쪽 특수교육 요건 및 MCPS Regulation JGA-RC를 보십시오.

만약 학생이 훈육을 이유로 대체 교습 프로그램에 있을 경우, MCPS Regulation JGA-RB, Suspension and Expulsion과 MCPS Regulation JGA-RC, 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적법 절차(DUE PROCESS)란 무엇인가요?

적법 절차는 공정한 통지, 의견 진술의 기회, 그리고 절차적 보호 조치를 의미합니다. 학교 차원에서의 적법 절차는 학생에게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리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거를 공유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조사 결과, 부과된 후속 조치(징계), 그리고 징계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실에서의 퇴실 또는 학교 등교 배제 조치가 정당화되는 경우에도,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이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IEP 또는 504 플랜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는 징계를 집행할 때 해당 플랜의 목표와 목적을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교육위원회 규정 JGA-RC).

중상해(심각한 신체적 손상)란 무엇인가요?

중상해(Serious bodily injury, 중대한 신체적 손상)란 외부 요인이나 물리력에 의해 신체 구조나 기능에 가해진 심각한 신체적 손상 또는 위해로, 광범위한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해에는 사망의 실질적 위험, 신체 부위, 장기, 정신 기능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 및 기능 상실, 의식 불명, 신체 기형/변형, 및/또는 지속되는 신체적 통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온라인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온라인 괴롭힘)은 괴롭힘(Bullying)의 한 형태로 개인이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해 전송되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사이버 불링에는 누군가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개인 정보나 사생활 정보를 전송, 게시, 공유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휴대 기기, 크롬북, 노트북, 그리고 디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AI)의 사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불링이 학교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했든 밖에서 발생했든 관계없이, 해당 행동이 학교의 안전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학생들은 동일한 징계 후속 조치를 받게 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MCPS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약자 괴롭힘/

왕따/불링/학교 폭력, 하라스먼트(괴롭힘/성희롱), 및 위협 행위를 금지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책 JHF)

학생들이 정규 수업 일과 시간(ACADEMIC DAY) 중에 개인 휴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규정 COG-RA, 개인 휴대 기기(Personal Mobile Devices)는 정규 수업 일과 시간 동안 MCPS 학생들의 개인 휴대 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정규 수업 일과 시간이란 등교를 알리는 첫 번째 종이 울릴 때부터 하교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발생하는 수업 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이동 시간 등 모든 구조화되거나 비구조화된 학습 경험 시간을 의미합니다.

개인 휴대 기기(personal mobile device-PMD)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음성, 영상, 문자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MCPS 지급 기기 이외의 모든 기기를 말합니다. 휴대폰, 전자책 단말기, 태블릿, 개인용 크롬북,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또는 마이크, 헤드폰(에어팟, 이어폰 포함), 스피커, 카메라가 탑재된 기타 기기는 모두 PMD로 간주됩니다. 단, 학생들은 MCPS 소유지 그리고 MCPS가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서 휴대용 통신 장비(PMD)를 소지할 수는 있습니다.

본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은 MCPS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MCPS는 PMD 등의 기기의 분실, 도난, 파손 또는 PMD의 무단 사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배상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COG-RA, 개인 휴대 기기(Personal Mobile Devices), ILA-RA, 보안 및 보고 요건이 포함된 평가(Assessments with Security and Reporting Requirements), 및 IGT-RA, 컴퓨터 시스템, 전자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사용자 책임/User Responsibilities for Computer Systems, Electronic Information, and Network Security 참조)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학)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참조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수업 빠지기(101)	적절한 사유 없이 학교에 등교한 후 수업을 빠지는 경우 ¹						중, 고등학교만 해당 Maryland주 교육법 제7-305조는 단순히 출석 관련 위반 행위만을 이유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단계의 징계 조치(교내 정학, ISS)를 내리기 위해서는 출석 관련 행동 외의 사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수업이나 학교에 늦게 도착할 경우 ^{1,2}	적절한 사유 없이 계속 학교에 등교한 후 수업을 빠지는 경우 ^{1,2} Maryland주 교육법 제7-305조에 따라 출석 관련 위반 행위만을 사유로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각(102) 참조MCPS Regulation JEA-RA: 학생의 출석 (Student Attendance)	적절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수업이나 학교에 늦게 도착할 경우 ^{1,2}						중, 고등학교만 해당 지각한 초등학교생은 처벌이나 격리조치를 받지 않습니다만 부모/후견인에게 연락을 하게됩니다.
		사유 없이 계속 수업에 늦게 들어가거나 늦게 등교하는 것 ¹²					
무단결석(103) 참조MCPS Regulation JEA-RA: 학생의 출석 (Student Attendance)	인정되지 않는 사유의 학교 결석 ¹²						지나치게 많은 결석(승인된 결석과 무단결석 모두)이나 지각을 한 학생은 학생 복지팀(Well-Being team-SWBT) 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학생 복지팀, SWBT는 반복적인 결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개입을 하는 과정을 구현합니다. 결석이 누적된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학생의 출석에 관한 정기적인 통지를 받게 됩니다.
		무단결석 ³					
		허가 없이 학교 부지(학교)를 이탈하는 행위					

¹ 학생은 "출석에만 관련된 문제의 경우" 퇴학 또는 정학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MD ANN CODE, EDUCATION § 7-305. 이는 다음 장에 명시된 행동에 적용됩니다: 수업을 빠지는 경우, 지각, 무단결석.

² 승인된 결석사유로는 직계 가족의 사망, 학생 또는 학생 자녀의 질병, 임신과 육아에 관련된 상태, 법원소환, 위험한 날씨 상태, 종교적 휴일, 주 비상상황, 정학, 학교가 승인 또는 후원하는 업무/일과 MCPS Regulation JEA-RA, Student Attendance; COMAR에 책정된 특정 상황입니다. 13A.08.01.03.

³ 각 분기에 8일 이상, 학기에 15일, 전체 학년도에 20일 이상(출석일의 약 10%)을 인정하지 않는 결석을 하였을 경우,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간주됩니다. MD ANN CODE, EDUCATION § 7-355.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학)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창작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알코올(201) Board Policy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남용 예방 (Preventing Alcohol, Tobacco, Other Drug Abuse); MCPS Regulations: COF-RA, MCPS 소유지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조항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on MCPS Property)과 IGO-RA, 학생이 관련된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사용 사건에 관한 가이드(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Cannabis, Tobacco, and Other Drug Use Involving Students)				음주 및 알코올 음료를 복용하거나 소지한 상태 ^{6,8}	알코올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⁷ 훈육적 조치의 일부로서 학교는 예방과 치료를 위해 Montgomery County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MCPS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추천/안내해야 합니다.		

흡연/흡입(202)⁸ Board Policy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남용 예방 (Preventing Alcohol, Tobacco, Other Drug Abuse); MCPS Regulations: COF-RA, MCPS 소유지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조항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on MCPS Property)과 IGO-RA, 학생이 관련된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사용 사건에 관한 가이드(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Cannabis, Tobacco, and Other Drug Use Involving Students)				흡입제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상태, 또는 그 영향하에 있는 상태 ^{5,7}	담배 등의 흡입제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7,9} 훈육적 조치의 일부로서 학교는 예방과 치료를 위해 Montgomery County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MCPS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추천/안내해야 합니다.		

* 학생이 알코올, 마약, 약물을 취한 것을 발견할 경우, 학교에 보건 서비스가 없을 때에는, 학생을 집으로 보내, 후에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학생을 연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을 집으로 귀가 조치하기 전, 학교는 학생이 가족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학교를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CPS Policy IGN, Preventing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를 참조하십시오.

* 학교에서의 훈육 대상은, 배부하는 물건은 판매, 알코올, 약물, 마약/규제 약물의 판매 또는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 기록을 위해 장애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코드 892를 사용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불법 약물"의 정의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전문인의 감독하에 사용, Controlled Substance Act 하에 사용 또는 기타 연방법 조항하에서 합법적으로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 기록을 위해 특수 교육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schedules of controlled substances in 21 U.S.C. § 812; 21 C.F.R. pt. 1308로 분류되는 마약 또는 약물을 판매한 경우 코드 891를 사용합니다.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학)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참조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약/규제약물 (203)¹⁰ Board Policy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남용 예방(Preventing Alcohol, Tobacco, Other Drug Abuse); MCPS Regulations: COB-RA, 사건 보고(Incident Reporting); COFRA, MCPS 소유지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on MCPS Property); 및 IGO-RA, 학생이 연루된 알코올, 대마초, 담배 및 기타 약물 사용 사건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Cannabis, Tobacco, and Other Drug Use Involving Students); JPC-RA,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to Students *의도치 않은 또는 유해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포함하는 약물에 관해서와 Maryland 주에서 21세 미만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일반의약품 및 처방약과 제품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Regulation IGO-RA를 참조합니다.	학생 약물 투여에 관한 규정 JPC-RA 학생에 대한 의약품 투여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to Students)를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약물을 스스로 휴대"하는 행위	학교 보건교사의 승인 없이 규정 JPC-RA를 위반하여 처방약을 본인이 직접 소지("자체 소지")하는 행위					
			학교 보건교사의 승인 없이 규정 JPC-RA를 위반하여 처방약을 본인이 직접 소지("자체 소지")하는 행위	JPC-RA 규정 또는 IGO-RA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소지하거나 그 영향을 받는 경우			
				규정 JPC-RA를 위반하여 일반의약품(비처방약)을 공유, 판매,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규정 JPC-RA를 위반하여 처방약을 공유, 판매,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류 (불법 약물) 또는 메릴랜드주 법상으로는 합법이나 대나비노이드 (카나비노이드) 성분과 같이 만 21세 미만자의 합법적 복용/합류가 금지된 물질을 공유, 판매,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¹¹		
					(학생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대마초나 카나비노이드를 스스로 휴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훈육적 조치의 일부로서 학교는 예방과 치료를 위해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MCPS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추천/안내해야 합니다.
학교장/디렉터/대리인과의 협의 후, 적절한 사법경찰관이 사건 대응 및 조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¹¹ 행동적 위험 평가를 학교의 훈육 결과 대체로 사용하거나 평가가 훈육 결과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학)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창작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담배(204) Board Policy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남용 예방(Preventing Alcohol, Tobacco, Other Drug Abuse); MCPS Regulations: COB-RA, 사건 보고(Incident Reporting); COFRA, MCPS 소유지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on MCPS Property); 및 IGO-RA, 학생이 연루된 알코올, 대마초, 담배 및 기타 약물 사용 사건에 대한 지침 (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Cannabis, Tobacco, and Other Drug Use Involving Students); JPC-RA,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to Students 나비노이드는 "약물/통제 물질(203)"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규정 IGO-RA에 정의된 출연 도구(시가, 담배, 파이프,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를 사용, 소지(홀대), 보유 또는 유통하는 행위. 이에는 출연을 모방하는 모든 종류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약품 또는 기타 목적으로 대마초를 직접 휴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훈육적 조치의 일부로서 ⁶ , 학교는 예방과 치료를 위해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MCPS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연계해야 합니다.
화재경보 (301)					총기류 소지 (예: 권총) ¹¹	사건은 Department of School Safety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법경찰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적절한 사법경찰기관이 사건 대응 및 조사를 주도합니다.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참조

¹¹ 연방정부와 Maryland 주 법: 화기/총포 무기를 학교 영역에 가지고 온 학생은 "최소한 1년 이상의 퇴학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카운티 교육감은 상황을 참작하여 더 짧은 기간의 퇴학조치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인가할 경우, 대체교육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MD ANN CODE, EDUCATION § 7-305(f)(2)-(3); COMAR 13A.08.01.12-1. 그러나 정학, 퇴학, 임시 대체공간을 포함한 학교 영역에 화기/총포무기를 가지고 온 장애학생의 훈육은 IDEA MD ANN CODE, EDUCATION § 7-305(g); COMAR 13A.08.01.12-1(C)의 요건에 따라 실행합니다. 기록을 위해 특수교육 학생의 경우, 코드 893 사용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학)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참작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타 총기류(302) *참조MCPS Regulation COE-RA, 무기류(Weapons)			모형 또는 유사 총기류를 소지한 경우(예: 장난감 총, 물총 또는 그 외 실제 총기와 유사한 외형의 물건)				"위협적 과시(Brandish)"란 위협할 목적이거나 분노 또는 흥분 상태에서 무기를 흔들거나 들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환 발사 기능이 있는 총기류 소지 (예: 비비탄총, 펠렛총, 캡건, 젤 블라스터, 에어소프트건 등)				
			화기가 아닌 총(예: BB, 총알, 캡, 젤 블래스터 또는 에어소프트건)을 휘두르거나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칼과 기타 흉기 (303) *참조MCPS Regulation COE-RA, 무기류(Weapons)			무기로 사용할 의도로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칼이나 기타 도구를 소지하는 행위				"위협적 과시(Brandish)"란 위협할 목적이거나 분노 또는 흥분 상태에서 무기를 흔들거나 들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로 칼이나 기타 도구를 무기로 제시, 위협적으로 과시,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성인공격(401) MCPS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학생이 행동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려스러운 성격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교사 및 기타 학교 직원은 제시된 우려 사항을 문제 해결하고 학생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계획할 자격이 있고 훈련된 직점한 팀에 학생을 의뢰해야 하며, 규정 IOH-RA, 학생을 위해 행동 건강 서비스로의 연계(Referrals to Behavioral Health Services for Students)에 명시된 대로 학생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계획해야 합니다. 동일한 행동이 이전에 발생했거나 ACA 정책 및 JFA-RA 규정에 명시된 이미지 또는 기호를 사용한 경우, 개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epartment of School Safety 또는 기타 사법 경찰기관과 협의한 후, 적절한 사법경찰기관이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밀 치거나 밀거나 기타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등 MCPS 직원이나 다른 성인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행위; 또는 싸움이나 기타 파괴적인 행동을 예방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개입하는 직원을 의도적으로 때리는 행위 IEP 또는 504 플랜이 있는 학생을 징계할 때, 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계획을 참조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장애 연관성 심사(Manifestation Determination) 회의 또는 원인 규명 회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학)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창작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공격(402) MCPS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의도적으로 거칠게 밀치거나 밀거나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강하게 행동한 경우를 포함한 MCPS 학생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예: 물수색, 의도적인 부딪침. 단 거칠게 부딪치며 노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나열된 요인에 따라 사지가 부러지거나 특히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MCPS 학생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경우		학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의 행동이 순간적인 행동인지 계획된 행동인지의 여부 - 학생이 도발/약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생이 싸우도록 도발했는지의 여부 - 학생이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행동했는지 여부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epartment of School Safety 또는 기타 사법경찰관과 협의한 후, 적절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협박(403) 학생협박(404) Board Policy COA; MCPS Regulation COA-RA				교직원, 학생 또는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언어 및/또는 이미지(구두, 서면, 디지털/전자 방식; 암시적 또는 명시적)를 사용하거나 신체적 행동(제스처)을 취하는 행위			징계 조치와 더불어, 학교는 행동 위협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합니다.
싸움(405) *Board Policy JHF,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학교 폭력, 회음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와 MCPS Regulation JHF-RA, 학생 약자 괴롭히기/왕따, 회음 및 협박 행위(Student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와 MCPS Form 230-35,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학교 폭력, 회음 및 협박 행위 신고 양식(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 참조 **MCPS Regulation JHG-RA, 갱, 갱활동 및 기타 유사 방해 및 불법 단체 행동 예방(Gangs, Gang Activity, or Other Similar Destructive or Illegal Group Behavior Prevention)과 MCPS Form 230-37, 갱관련 사건 신고 양식(Gang-Related Incident Reporting Form)을 참조.			가벼운 상처, 긁힘, 타박상을 초래하는 싸움에 연관된 경우		6학년-12학년		학교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의 행동이 순간적인 행동인지 계획된 행동인지의 여부 - 학생이 도발을 받아 정당방위로 행동했는지, 혹은 다른 사람을 싸움에 가담하도록 도발했는지 여부 - 학생이 폭력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행동을 취했는지, 또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개입하여 학생들을 떨어뜨려 놓으려 했는지 여부 학교 운영을 방해하거나 표기된 기준에 따라 사지 골절 또는 기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싸움에 개입하는 행위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학)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참조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금품강탈(406) MCPS Regulation COB-RA				협박, 공포, 폭력(무기 미사용)으로 타인의 물건을 뺏는 행위			징계 조치와 더불어, 학교는 행동 위험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합니다.
				협박, 공포, 폭력(무기를 사용하지 않는)으로 타인의 물건을 뺏는 행위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학교 폭력/희롱(407) Board Policy ACF, JHF; MCPS Regulations ACF-RA, ACI-RA, COB-RA, JHF-RA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학교 폭력(BULLYING)—학생들 사이에서 교육위원회 정책 JHF(Policy JHF)에서 금지하는 행위 요건에 해당하는 원치 않고 비하적인 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사이버 불링, 괴롭힘/사이버 폭력(CYBERBULLYING)—개인이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있는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괴롭히는 것. 사이버 불링에는 당혹감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개인 또는 사적인 정보를 전송, 게시 또는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용 모바일 기기 사용 및 답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희롱/괴롭힘(HARASSMENT)—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해당 개인을 불쾌하게 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실제 또는 인식적 음해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성적 부적절 행위와 관련된 괴롭힘에는 성적 행위, 성적 공격 및 성희롱/성추행이 포함됩니다.			어떠한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든, 학교는 개인/중재 방법을 강조해야 하며, 학생을 적절한 상담/카운슬링에 연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노숙 상태 또는 장애에 유별된 학생의 행위는 즉시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불링에는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유발하는 개인적, 사적 정보를 전송, 게시 또는 공유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는 타인을 속이거나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디지털 명의의 도용, 무단 또는 허위 소셜 미디어 프로필 생성, 불인 조사를 위한 음성 복제 기술이나 생성형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성적 부적절 행위(Sexual Misconduct) 또는 성희롱/성추행(Sexual Harassment) 시안의 경우, 학교 관리자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위협/협박(INTIMIDATION)—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두려움이나 열등감을 유발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보복(Retaliation) 또는 앙갚음(reprisal)은 협박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 또는 차별을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로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학)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참작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심각한 신체상해 (408)				고의가 아닌 심각한 신체상해를 유발하는 행동에 혹은 무의식 상태의 결과를 낳은 행동에 연관된 경우			중상해(Serious bodily injury)- 중대한 신체적 손상)란 외부 요인이나 물리력에 의해 신체 구조나 기능에 가해진 심각한 신체적 손상 또는 위험로, 광범위한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는 사명의 실질적 위험, 신체 부위, 장기, 정신 기능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 및 기능 상실, 의식 불명, 신체 기형/변형, 말/ 또는 지속되는 신체적 통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심각한 신체상해를 유발하는 행동에 연관된 경우			
방화/화재(501)				타인을 해칠 의도없이 방화를 하거나 방화를 도운 경우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epartment of School Safety 또는 기타 사법경찰기관과 협의한 후, 적절한 사법경찰기관이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해치거나 타인 소유물을 파괴할 의도로 방화를 하거나 방화를 도운 경우			
경보기 허위작동 (50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나 재난 경보를 고의로 발령하는 행위 (예: 전화, 개인 모바일 기기(PMD), 또는 직접적으로 – 화재경보 장치 작동, 911 오용 등)나 소방기구(소화기 등) 를 이유 없이 작동시키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epartment of School Safety 또는 기타 사법경찰기관과 협의한 후, 적절한 사법경찰기관이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폭파위협(502) MCPS Regulation COB- RA, Incident Reporting 참조				폭파협박이나 총격협박을 하는 것, 위협 행위(Threats)에는 구두, 서면, 이미지, 온라인 및/또는 기타 전자적 통신 수단 등을 통한 정보 유포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계 조치와 더불어, 학교는 행동 위협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epartment of School Safety 또는 기타 사법경찰기관과 협의한 후, 적절한 사법경찰기관이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책)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참조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폭발물(503) *MCPS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참조				사람이나 소유물을 해칠 수 있는 방화 또는 폭파 물질, 자료 또는 총기 외의 모든 형태의 쏘아서 가연성 또는 폭발되는 물질을 소유한 경우 (예: 폭죽, 연기폭죽, flare 폭죽, "snap pops"는 혼란을 유발하여 협박을 할 수 있으므로 예외)			
				위에서 명시한 대로 방화 또는 폭파 기기 또는 물질을 폭파, 소유, 협박하는 행위			
*성적 공격(601) *Department of Student Code and Appeals에의 연락과 같은 MCPS 보고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타인에게 신체적,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연관된 경우			훈육적 조치의 일부로서 교직원들은 학생을 적절한 카운슬링에 연계해야 합니다. 강간 또는 비동의 성적 행위는 즉시 경찰 사법경찰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사건 대응 및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성희롱(602) Board Policy ACF, JHF; MCPS Regulations ACF- RA, ACI-RA, COB-RA				원치 않는 성적 언동, 성적 대가 요구, 및/또는 기타 성적 성격의 부적절한 구두, 서면, 디지털, 전자, 신체적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훈육적 조치의 일부로서 교직원들은 학생을 적절한 카운슬링에 연계해야 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와 협의하며, 학교는 적절한 조치 및 결과를 결정할 때 나이, 학년, 발달 수준, 이전 위반 사항, 의도적이지와 상황에 따른 것인지를 고려하며 법을 준수하여 대응을 합니다.
성적 행위(603)				성에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예: 음란적 노출, 성에 관련된 부적절한 문자, 학교 소유지에서의 성행위)			훈육적 조치의 일부로서 교직원들은 학생을 적절한 카운슬링에 연계해야 합니다. 강간 또는 비동의 성적 행위는 즉시 경찰 사법경찰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사건 대응 및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Regulation COB-RA, Incident Reporting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시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학)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참작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무례하게 구는 행동 (701) *반항은 무례함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언어 또는 서면으로 또는 심벌로 타인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예: 비하하는 말, 욕, 말대답)						지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무례함이 이루어지거나 학습환경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경우, 무례함은 방해로 간주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 교사, 교직원, 학교 행정담당자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						
방해(704)	사소한 행동이 학습환경을 방해할 경우						수업 방해(Disruption)란 교수·학습 활동을 방해하거나, 타인 또는 교실 환경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거나, 학교 및/또는 교육청의 질서 있는 운영과 안전을 저해하는 학생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교습과 학습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간정도 또는 심각한 행동에 연관될 경우						
				사람이나 재산에 즉각적인 위협을 초래하거나 교유 과정을 방해할 지속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6학년-12학년 중오 또는 차별을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를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교육위원회 Policy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참조			
복장 (706) MCPs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경고를 받은 후에도 복장규정을 어겼을 경우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복장규정을 어겼을 경우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시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학)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참조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학업 및 시험 부정행위 (801) *참조 MCPS Regulation IKA-RA: 성적 평가 및 성적 보고(Grading and Reporting) 참조	학업 부정행위(Academic Dishonesty)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타인 또는 인공지능(AI)이 작성한 결과물이나 아이디어를 본인의 것으로 인용하는 표절 행위, (2)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제공하기 위해 비공식 자원이거나 시를 무단 사용하는 등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부정행위(커닝), (3) 교사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서명 위조 행위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은 평가시험이나 다른 채점되는 과제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개시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MCPS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시험에서 방해를 하거나 방해할 하도록 돕는 행위 평가시험이나 다른 채점되는 과제의 정보를 계속적으로 또는 폭넓게 배포하는 행위		

개인 전자기기의 부적절한 사용 (802)⁴ MCPS에서는 이를 "개인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Personal Mobile Devices)" 또는 "PMD"라고 합니다. MCPS 규정 참조: COG-RA, 개인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Personal Mobile Devices); IGT-RA,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전자정보, 네트워크, 보안 책임(User Responsibilities for Computer Systems, Electronic Information, and Network)를 봅시다. 보안: MCPS Regulation IKA-RA 보안평가와 보고요건(Assessments with Security and Reporting Requirements)을 봅시다.	MCPS의 개인 모바일 기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거나 보는 행위 ^{4.5}		경고 후에도 MCPS의 PMD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거나 보는 행위		MCPS 소유지 밖에서 발생하는 위반/부정 행위는 학습 환경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관계없이 학교 환경과 연결되어서는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교육 환경을 방해하는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학년-12학년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사생활을 침해하는 PMD를 사용한 정보 전달 행위; 학생이나 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외설적이거나 명예 훼손적인 내용; 학교 활동이나 MCPS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학문적 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MCPS 컴퓨터 시스템, 관련 기술 또는 전자 정보 (성과 또는 기타 학생 정보 포함)의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 (성과 또는 기타 학생 정보 포함)의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		학생 데이터 개인정보 침해: 학생은 승인되지 않은 공개 생성형 AI 플랫폼에 개인식별정보(PII), 교육적 보안 데이터, 또는 동료 학생 및 MCPS 교직원의 사적인 개인 기록(성적표, 동료 학생의 과제 초안, 개인 메시지 등 포함)을 업로드, 입력,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오정보(misinformation)나 허위정보(disinformation, 예: 딥페이크)의 유포 및 개인 모바일 기기(PMD)를 통한 감시 목적의 활용은 학생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MCPS 네트워크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PMD를 사용하는 것(PMD를 사용하여 기록을 변경하거나 전자 자산을 파괴하는 것, 외부 포록시 또는 가상화된 브라우저와 함께 MCPS 장치를 사용하여 MCPS 네트워크를 방해하려는 시도 포함) 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기 위한 인공지능(예: 딥페이크)의 사용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학)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참조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절도(803) MCPS Regulation COB- RA, Incident Reporting		500달러 미만 가치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도용한 행위 (도난, 분실 또는 손상된 재물에 대한 보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강도/강도미수는 즉시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은 조사를 주도해야 합니다.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epartment of School Safety 또는 기타 사법경찰기관과 협의한 후, 적절한 사법경찰기관이 동일한 학생이 저지른 단일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도난당한 재산의 가치가 1,500달러 이상이면 재산을 기가 1,500달러 이상인 경우 대응하고 조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다음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이 물건/소유물을 취하려는 의도 • 물건/소유물의 금전적 가치 • 학생의 행동이 순간적인 행동인지 계획된 행동인지의 여부 • 물건/소유물이 값어치가 나가거나 대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하는지의 여부 • 물건/소유물을 돌려주었거나 복귀시켰는지 여부
			5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 소유물을 취득 또는 획득하는 행위 이전에 발생한 절도 사건 및/또는 사전 계획된 조직적 절도에 공모한 행위 (도난, 분실 또는 손상된 재물에 대한 보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804) *MCPS Regulation COC- RA: Trespassing or Willful Disturbance on MCPS Property (MCPS의 구역 무단침입 또는 고의적 소란 행위) 참조			정학과 퇴학을 포함한 처벌시 허락 없이 MCPS 소유지에 들어오는 것				증오심, 혐오를 조장하는 언어 또는 이미지 및/또는 심벌을 표시하는 것은 특정 사건에서 정계 대응 수준을 높이는 가중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위반 행위의 예로는 싸움,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공격, 마약 관련 위반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우고, 다른 학생이나 직원을 공격하거나, 재산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침입하는 행위		

*A PMD has three distinguishing features: 1) MCPS does not own or issue the device. 2) The device has the capability to obtain an Internet, wi-fi, or cellular connection to send and receive data. 3) The device has the capability to create and capture sound and images/video.

*Information may not be communicated using a personal mobile device (PMD) if it violates the privacy of others, jeopardizes the health or safety of students, is obscene or libelous, causes disruption of school activities, plagiarizes the work of others, or is a commercial advertisement.

학생 행동 및 개입 대응 수준

운영 규정	조치 단계 1 교실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조치	조치 단계 2 교사 주도/연계 및 행정 지원 조치	조치 단계 3 행정 지원 및/또는 분리 조치 (교내 중재 또는 교내 정학)	조치 단계 4 행정 지원 및 단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1-3일)	조치 단계 5 행정 지원 및 장기 교외 등교 배제 조치 (4-10일)	조치 단계 6 행정 지원 및 교외 등교 배제 조치: 연장 정학(11-44일) 또는 퇴학(45일 이상)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및 요소
적절한 개입(지도)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8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별 생활지도(Progressive Discipline),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그리고 "감경(Mitigating)" 및 "가중(Aggravating)" 참조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 기물 파손 (806) 다음 규정을 함께 참고하십시오: COG-RA, 개인 모바일 기기(Personal Mobile Device), ECC-RA, MCPS 재산의 분실 또는 훼손(Loss of or Damage to MCPS Property), ECG-RA, 주차 시설 및 학생 운전(Parking Facilities and Student Driving), JNA-RB, 학생 재정 의무의 징수(Collection of Student Financial Obligations)	사고에 인한 파손						범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학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이 물건/소유물을 취하려는 의도 • 물건/소유물의 금전적 가치 • 학생의 행동이 순간적인 행동인지 계획된 행동인지의 여부 • 물건/소유물이 값어치가 나가거나 대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하는지의 여부 • 학생이 물건/소유물을 파손한 이유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성별, 장애, 노숙 상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을 훼손한 경우, 해당 행위를 즉시 관찰 사법경찰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물 파손 행위는 발견 후 1시간 이내에 Division of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에 보고해야 하며, 규정 COB-RA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MCPS, 교직원, 다른 학생의 재산에 고의적으로 \$500 미만의 피해를 입힌 경우					
				MCPS, 교직원, 다른 학생의 재산에 고의적으로 \$500 또는 그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기반한 증오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미지나 상징을 표시하는 행위로 인해 학교나 교육구의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행동 중재 및 정의

행동 계약 (Behavioral contract)	수업과 같이 학교 교직원이 만든 정식 계획을 시행하는 동안 학생이 행한 부적절 또는 방해가 되는 행동을 고치기 위해, 긍정적 행동개입, 전략, 보조/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카운슬러/주임 스페셜리스트 확인 (Check-in with School Counselor/Resource Specialists)	학교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학생과 관계가 있는 학교 카운슬러, 리소스 교사, 학교 심리학자, 학교 소셜워커, 코치 등에게 비공식 체크인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교실에서의 훈육 조치 (Classroom-based Responses)	즉각 학생의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타임아웃, 교사 학생 면담, 생각하는 의자, 재지도(롤플레이), 좌석 변경, 학부모에게 연락, 교실 내에서의 특혜 상실 또는 용서를 구하는 편지 등과 같이 교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치/지도를 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Community Service)	학생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예: 수프키친, 공공장소 청소 또는 연장자를 위한 시설에서의 도움) 참고: 이러한 활동에의 시간은 학생 봉사 학습(Student Service Learning)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갈등해결 (Conflict Resolution)	(학교에서 또는 외부에서 시작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방법을 사용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후견인/보호자와 교사 및 교직원 그리고/또는 학교장은 갈등 조정과 분노조절,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와 효과적 의사소통 등과 같은 문제해결능력과 기술을 향상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격리(디텐션/ Detention)	학생은 지정된 기간동안 학교 시작 전, 쉬는 시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지정된 교실에 가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훈육 조치 전에 학부모/후견인에게 연락해야만 합니다.
격리(정학/Expulsion)	학생이 45일 이상 학생의 일상 학과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학교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정학 전에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다치게 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학교에 돌아오는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학생이 격리되는 기간을 실행가능한 제일 짧은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 교육 시스템은 수업시간에서 격리되는 학생에게 비슷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수업으로 돌아갔을 때 성공적일 수 있도록 행동개선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MAR 13A.08.01.11(B)(2)(a-c).
기능 중심의 행동 평가와 행동 중재 계획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and Behavioral Intervention Plan)	기능 중심의 행동평가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FBA) (MCPS Form 336-64)는 학생의 부적절하거나 방해가 되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직원이 이를 고치기 위해 또는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학생을 위한 행동 중재 계획 (MCPS Form 336-65 사용)을 개발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 FBA를 사용하여, 교직원팀과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은 적절한 행동 목표와 문제행동 예방과 대응을 위한 중재와 대체 또는 대신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교내 중재 (In-school Intervention)	학교 건물 내의 학생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다음을 계속할 기회는 제공됩니다. (i) 일반 교과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진도가 나가는 교습을 받습니다. (ii)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학생이 장애가 있을 경우, 특수교육 또는 학생의 IEP에서 명시한 대로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습니다. (iii) 프로그램에 맞는 교습을 일반 수업시간에서 받습니다. (iv) 적절하다면, 학생이 현재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급우와 함께 참여합니다. COMAR 13A.08.01.11(C)(2)(a)
멘토 프로그램 (Mentoring Program)	(비공식 및/또는 학교차원에서 예방) 학생의 개인, 학업 사회적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와 연결합니다. (예: 카운슬러, 교사, 같은 또래 친구, 지역사회원)

행동 중재 및 정의 (계속)

부모 아웃리치 (Parent Outreach)	부적절하거나 방해가 되는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의 행동을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 학부모/후견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습니다.
학부모/후견인과 학생/ 교사 면담(Parent/ Guardian and Student/Teacher Conference)	학생과 학부모/후견인/보호자와 교사 및 교직원 그리고/또는 학교장이 함께 학생의 행동과 행동에 따른 사회, 학업, 개인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또래 중재 (Peer Mediation)	훈련받은 학생이 중재자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문제 해결방법을 적용합니다.
추가조치 권고 (Recommend for Further Action)	학생을 학교 행정담당에게 장기 정학, 퇴학, 대체 교습으로의 인계 또는 법 집행 기관으로의 연락 권고합니다.
대체교육으로의 인계 (Referral to Alternative Education)	대체 프로그램의 배치를 MCPS Regulation IOI-RA, Placement Procedures for Alternative Programs에 따라 학교 행정담당에게 추천합니다.
적절한 약물중독 기관으로의 인계 카운슬링 서비스 (Referral to Appropriate Substance Abuse Counseling Services)	학교장이나 대리인에게 상의를 하여 약물남용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 건강담당 부서 또는 커뮤니티 내의 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 같은 학교 내외의 서비스기관에 학생을 인계합니다.
커뮤니티 내 기관에의 인계(Referral to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학교장이나 대리인에게 상의를 하여, 학생을 방과 후 프로그램, 개인 또는 그룹 카운슬링, 리더십 개발, 갈등/분쟁 해결 및 개인 교습 등 다양한 서비스에 인계합니다.
건강/정신 건강 서비스로의 인계 (Referral to Health/ Mental Health Services)	학교장이나 대리인에게 상의를 하여, 학생을 학생이 필요한 카운슬링과 평가를 제공하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 내의 건강 및 정신건강 클리닉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에 인계합니다. 학생은 성공적인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적절하고 방해가 되는 문제나 염려되는 점을 조용히 개인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점을 이겨낼 수 있는 목표와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분노 조절반과 공식 또는 비공식 행동지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의 인계 지원팀(Referral to Student Support Team)	학교장 또는 대리인과의 면담/상담에는 학교 카운슬러 학생담당관, 교사, 학교장, 소셜워커, 의료서비스제공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심리학자, 학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고안된 예방과 중재 기술과 대체 전략개발을 돕는 외부 기관 케이스 매니저 등과 같은 학생을 돕는 지원팀을 동반합니다. 만약 학생 지원 팀이 만든 계획을 적용하였음에도 향상되지 않을 경우는, 학교팀은 MCPS Regulation IOI-RA, Placement Procedures for Alternative Programs에 따른 대체 계획 배치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의 격리 또는 혜택 상실 (Removal from Extracurricular Activities/Loss of Privileges)	학교장/대리인과 상의하여 운동, 동아리/클럽 등을 포함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못하게 되거나 현장학습이나 학교 댄스 등을 포함한 학교 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박탈합니다. 만약 학생이 이에 해당될 경우, 빠지게 되는 활동에 지불한 비용은 가능한 경우, 환불이 됩니다.
손해배상(Restitution)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잃거나 파손되거나 다친 경우 배상/보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은 금전적 배상 및 학생을 학교 업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실행 배상 중 하나 또는 양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COMA 13A.08.01.11(D)에 따라 학생이 주 또는 카운티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교육구/학교 소유물이나 학교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물을 파손, 파괴하거나 가치를 낮추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생, 학생의 학부모/후견인 및 적절한 개인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 후, 학생 또는 학생 학부모/후견인 또는 적절한 사람에게 복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금전적 배상은 2,500불 또는 기물/소유물의 금전적 가치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지불합니다.

행동 중재 및 정의 (계속)

회복 조치 접근법 (Restorative Approaches)	(교실 기반 또는 전문가 주도) 회복적 접근법은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 유지하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용됩니다. 회복적 접근법은 사람에 대한 피해를 포함하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식별 및 해결하고, 피해를 야기한 학생이 이를 회복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설계된 중재, 대응, 및 실천 방안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CPS Regulation JGA-RB, 정학 또는 퇴학(Suspension or Expulsion)을 보십시오.
학교 또는 커뮤니티에서의 회의 (School-based or Community Conferencing)	학생과 교직원, 그 외에 갈등에 연루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제, 문제의 해결, 해결방법의 제안 등에 대해 함께 토론향니다. (예: “Daily Rap,” “Morning Meetings”)
학교 복귀(복교) 면담 (School Readmission / Intake Meeting)	징계 후속 조치(정학) 후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당일에 학교장/교감과 함께 복학(재등교)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복귀(재등교) 회의는 장기 결석이나 학생이 며칠 동안 출석하지 못한 기타 사건 이후에도 개최될 수 있습니다.
정학/Suspension (단기. 학교 외/Short-term, Out-of-School)	징계 목적으로 학교장에 의해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 후 최대 3 수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학교에서 퇴장(등교 금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정학/Suspension (장기. 학교 외/term, Out-of-School)	징계 목적으로 교장에 의해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 후 4 수업일에서 10 수업일 사이의 기간 동안 학생을 학교에서 퇴장(등교 금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정학/Suspension (하루 정학/Overnight)	징계 목적으로 학교장에 의해 학부모/후견인/보호자에게 통보 후 수업 일수의 남은 시간 동안 학생을 귀가(학교 등교 배제)시키는 조치입니다. 학생은 다음 수업일에 복귀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날, 학교장/교감 및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행동 기대 수칙을 정리하는 학생 복학 회의를 가져야 합니다. 정학 기간 중에는 정규 수업 시간 안팎을 막론하고 체육 경기, 클럽 활동, 공연 또는 기타 학교 관련 행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MCPS 관련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정학/Suspension (학교 내/In-school)	학생을 10일(학사일) 미만 일상 학과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교장은 훈육 사유를 학부모/후견인/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학 기간 중에는 정규 수업 시간 안팎을 막론하고 체육 경기, 클럽 활동, 공연 또는 기타 학교 관련 행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MCPS 관련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정학/Suspension (연장. 학교 외/Extended, Out-of-School)	징계 목적으로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 후 연장 정학 기간(11 수업일에서 44 수업일 사이) 동안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을 등교 배제하는 조치이며, 오직 다음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다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학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심각한 위협의 임박한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 학생이 교육 과정을 만성적이고 극심하게 방해하여 하루 동안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했고, 이용 가능한 다른 적절한 행동 및 징계 중재 수단을 모두 소진한 경우 교육감 지정 대리인은 등교 배제 기간을 실제 실행 가능한 최단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등교 배제된 학생이 정규 학업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등한 교육 서비스 및 적절한 행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학 기간 중에는 정규 수업 시간 안팎을 막론하고 체육 경기, 클럽 활동, 공연 또는 기타 학교 관련 행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MCPS 관련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교실에서의 임시 격리 조치(Temporary Removal from Class-퇴실)	학교 건물 내에서 학생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최대 1교시(수업시간)이하를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학생 행동 규범 및 특수교육 요건

교육위원회 Regulation JGA-RA, 장애 학생의 정학 및 퇴학(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인과 관계 평가(MANIFESTATION DETERMINATION) 및 45일 IAES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간편 안내

인과 관계 평가 IEP 팀 회의 및 임시 대안 교육 시설(IAES) • MCPS 리더들을 위한 시스템 전반 참고 가이드

행동 규범 — 장애 학생(STUDENTS WITH DISABILITIES-SWD)에 대한 징계 조치

개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모든 학생에 대해 높은 기대를 유지하며,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공평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IEPs)이 있는 학생도 **모든 학생과 동일한 학생 행동 규범 기준 및 행동 표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방법 및 주법은 징계 결정 시 학생의 장애와 해당 위반 행동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행동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교육적으로 적절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학생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과 관계 평가(MANIFESTATION DETERMINATION) 규정의 이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인과 관계 평가 검토(Manifestation Determination Review -MDR)**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누적 10 수업일**을 초과하는 등교 배치 조치로서, 배치 변경(change of placement)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 연법 및 주법상 허용되는 특정 징계 목적의 등교 배치 조치를 검토하는 경우

이 절차 동안 IEP 팀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1. 해당 위반 행동이 학생의 장애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 또는
2. 해당 위반 행동이 학생의 IEP를 이행하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인지 여부

이후 팀은 장애인교육법(IDEA), COMAR, 및 절차적 보호 조치 요건에 따라 적절한 후속 단계와 지원 방안을 결정합니다.

임시 대안 교육 시설(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IAES)

연법 및 주법에 명시된 제한적인 상황에 한해, IEP 팀은 **최대 45일간 임시 대안 교육 시설(IAES)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AES란—

- 임시 교육 배치 공간이며
- 교육 서비스 및 지원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환경이고
- IEP 목표를 향해 계속 정진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배치이며
- 교장의 재량하에 특정 법적 상황 및 절차적 요건에 따라서만 검토됩니다.

배치 결정은 개별화되어 이루어지며, 학생의 필요, 이용 가능한 정보, 및 관련 법적 요건에 기반합니다.

학생 행동 규범 및 대안 교육 프로그램 요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대안 교육 프로그램(Alternative Education Programs)은 기존의 일반 중합학교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중, 고등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일반 학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추가적인 학업, 행동, 사회적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안 교육 프로그램의 이해

MCPS 대안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연계 지원체계(continuum of supports)의 일환입니다:

1. 심각한 학업적 어려움
2. 만성적인 출석 문제
3. 행동상의 문제
4. 정서적 또는 정신 건강 문제
5. 일반 중, 고등학교 환경에서 적응 및 성취의 어려움

대안 교육 프로그램(Alternative Education Programs)은 Blair G. Ewing 센터와 같은 전용 대안 교육 시설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학점을 취득하며, 행동과 출석을 개선하여 ultimate하게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생은 어떻게 대안 교육 프로그램(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입학 자격을 얻게 되나요?

MCPS 학생은 마그넷(Magnet) 프로그램이나 기타 특별 학업 프로그램처럼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신 MCPS는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먼저 다양한 중재 및 지원책을 시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동의 심각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교육 환경 배치 변경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추천하기 전에 회복적 접근법(restorative approaches) 및 점진적 징계(progressive discipline)와 같은 일련의 학습 및 행동 전략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대안 교육 프로그램 검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학업 실패
2. 심각한 행동상의 문제
3.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서적 어려움
4. 일반 학교 환경이 더 이상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학부모가 대안 교육 프로그램 등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학부모는 학생 담당 카운슬러, 학교 행정/교장단, 또는 학교 지원 팀과 우려 사항을 상담하고 대안 교육 프로그램 평가가 적절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요청만으로 학생의 자격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MCPS는 자체 추천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배치 결정을 내립니다.

대안 교육 프로그램은 특수 교육(SPECIAL EDUCATION)으로 간주되나요?

대안 교육 프로그램은 특수 교육 서비스와 별개입니다. MCPS가 적절한 교육적 배치라고 판단하는 경우, IEP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대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EP가 있는 학생에게는 연법, 주법, 및 교육위원회 규정 JGA-RA, 장애 학생의 정학 및 제학(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에 명시된 대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행동 수칙 및 특수 교육 요건 31페이지를 참조)

학교 수준 조사를 위한 흐름

사건 통보 및 접수

- 학교 관리자(교장단)에 사건 접수
- 필요시 학습지원, 학교개선 부서(DSLI) 디렉터 및 학군/클러스터 보안 코디네이터 연락

안전 확보

- 관련 학생 즉시 분리
- 필요시 응급 처치 제공
- 상황에 따라 대기(Hold), 안전 유지(Secure), 또는 락다운/행동제재(Lockdown) 발

중요한 우선순위

- 학생의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수칙 및 지원 조치 계획(Supportive Measures Plan)에 따라 학생의 적정 절차(Due Process) 권리 보장

학생 진술서 작성

- 개별 진술서 수집:
 - » 학생
 - » 교직원
 - » 학교 보안담당
- MCPS Form 230-45, 학생 사건 진술서 양식(Student Incident Statement Form) 사용할 것

징계 대상 학생에게는 반드시 목격자/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조사

- 목격자 면담 및 조사를 실시
- 사건 발생 타임라인(시대순 경과)을 작성
- MCPS 수색 및 압수(Search and Seizure) 절차를 준수

이용 가능한 증거 수집

- 영상 증거
 - » 보안 카메라
 - » 학교 통학버스
 - » 휴대 전화
- 휴대폰 영상
 - » MCPS 컴퓨터, 화면
 - » 화면 캡처(스크린샷)

결과 결정

-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에 의거하여 징계 부과
- 가능한 경우 행동 위협 평가 팀(Behavioral Threat Assessment Team-BTAT) 회의 소집을 검토
- 회복적 접근법 계획(Restorative Approaches Plan)을 수립

통보 및 공유

- 발송 문서
 - » 정학 통지서 (Suspension letter)
 - » 학교-지역사회 안내문 (School-community letter)*
- 정학 처분 통보 대상:
 - » 학교 관리자 팀(Admin team)
 - » 학생 담당관(Pupil Personnel Worker)
 - » 출결석 담당 비서(Attendance Secretary)
 - » 학교 보안 담당(School Security)
 - » 교사

기록 유지와 관리

- Synergy에 사건을 입력하고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 10일 초과 정학 및 제학(10&E) 요청 건은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에 통보

Synergy 시스템 입력 및 기록은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계획 후속 조치

- 지원 조치 계획(Supportive Measures Plan)
- 카운슬링 지원
- SWBT에 의뢰
- 회복적 접근법 계획(Restorative Approaches Plan) 실행
- 학교 복귀(복교) 계획(Re-entry plan)
- 학교 복귀(복교) 면담(Intake Meeting)

학생 행동 중재, 안전과 웰빙(BEHAVIOR INTERVENTION, SAFETY, AND WELL-BEING)을 위한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

Policy ACA, 차별금지, 형평성, 문화적 이해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학생의 성적 위법행위와 성희롱(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Policy ACI, 직원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of Employees)
Policy COA, 학생의 안녕과 학교 안전(Student Well-being and School Safety)
Policy EEA, 학생 교통편(Student Transportation)
Policy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알코올, 대마초, 담배, 기타 마약 남용 예방(Preventing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Policy IGA, 학생을 위한 사회 정서적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래밍 서비스(Social Emotional and Mental Health Programming and Services for Students)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Policy JGA, 행동 중재, 안전과 웰빙 계획(Behavior Interventions, Safety and Well-being Plan)
Policy JHF,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학교 폭력,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gulation ACA-RA, 차별금지, 형평성, 문화적 이해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Regulation ACF-RA, MCPS 학생의 Title IX 성희롱 조사(Investigation of Title IX Sexual Harassment of MCPS Students)
Regulation ACG-RB, 1973년 504 장애법에 해당되는 학생을 위한 적절한 조정 및 수정(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Modifications for Students Eligible Under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Regulation COA-RA, 행동적 위협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
Regulation COC-RA, MCPS의 구역 무단출입 혹은 고의적 소란 행위(Trespassing or Willful Disturbance on MCPS Property)
Regulation COE-RA, 무기류(Weapons)
Regulation COF-RA,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소유 지역 및 영역에서의 알코올, 대마초, 담배, 기타 약물(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Property)
Regulation COG-RA, 휴대 전화기기(Personal Mobile Devices)
Regulation ECC-RA,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소유 지역 및 영역의 재산 손실(Loss of or Damage to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Property)
Regulation EEA-RA, 학생 교통편(Student Transportation)
Regulation EEB-RA, MCPS 버스 운영(Operation of Care of MCPS Buses)
Regulation IGO-RA: 학생이 관련된 알코올, 대마초, 담배, 기타 약물 남용건에의 지침(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volving Students)
Regulation IGT-RA,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망 보안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User Responsibilities for Computer Systems and Network Security)
Regulation ILA-RA 보안평가와 보고요건(Assessments with Security and Reporting Requirements)
Regulation IOI-RA, 대체 프로그램을 위한 배정 절차(Placement Procedures for Alternative Programs)
Regulation JEA-RA, 학생의 출석(Student Attendance)
Regulation JEE-RA, 학생 전학(Student Transfers and Administrative Placements)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Regulation JGA-RA, 학급 운영과 학생 행동중재(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
Regulation JGA-RB, MCPS 학생의 정학 및 퇴학(Suspension or Expulsion)
Policy JGA-RC, 장애 학생의 정학과 퇴학(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gulation JGB-RA, 수색과 압수(Search and Seizure)
Regulation JHF-RA,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학교 폭력, 희롱 및 협박 행위(Student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gulation JHG-RA, 갱, 갱활동 및 기타 유사 방해 및 불법 단체 행동 예방(Gangs, Gang Activity, or Other Similar Destructive or Illegal Group Behavior Prevention)
Regulation JNA-RB, 학생의 재정적 의무(Collection of Student Financial Obligations)
Regulation JPC-RA, 학생에 대한 의약품 투여(Administration of Medication to Students)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 국적, 종교, 이민 신분,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혼인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그 외 법적 또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기타 속성에 근거한 불법적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형평성, 포용성, 수용성을 창출하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저해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보십시오. 이 정책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중요하다는 교육구의 신념 특히, 교육적 결과가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예측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형평성이 내재적 편견, 정당하지 않은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그리고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기타 지정된 청소년 단체에 동등한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 (1) 1964년 연방인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상태, 성적 지향, 성적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현재 재학생, 입학 희망 학생, 또는 현재 재학생 및 입학 희망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를 차별하는 행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상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 희망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현재 재학생을 퇴학시키거나, 현재 재학생 및 입학 희망 학생 또는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거부하는 행위
 - (c)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해,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징계하거나 벌칙을 적용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행위**

연락처와 연방, 주, 지역 법에 있는 요건은 이 서류와 갱신판 사이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본 버전에 포함된 내용 및 참조 사항보다 우선합니다. 갱신된 최신 정보는 다음 온라인판을 참조하십시오.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nondiscrimination.

MCPS 학생 대상 차별에 관한 문의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 대상 차별에 관한 문의 또는 불만사항***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Team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른 학생 편의 제공 요청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직원 편의 제공 요청
Section 504 Coordinator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Department of School Counseling 850 Hungerford Drive, Room 170, Rockville, MD 20850 240-987-8031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을 포함하여 Title IX에 따른 성차별에 관한 문의 또는 불만 사항***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Title IX Team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공지는 개정된 연방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61 Forsyth St. S.W., Suite 19T10, Atlanta, GA 30303, 404-974-9406 and TDD: 800-877-8339, OCR.Atlanta@ed.gov,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요청 시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될 수 있으며, 미국 장애인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으로도 제공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십시오. 수어 통역 또는 구어 스피치 통역이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하십시오.

